

## 「폐기물관리법」 제정안

### 1. 제정사유

환경보전법과 오물청소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폐기물(분뇨, 쓰레기, 산업폐기물) 관리를 단일법에 규정하여 폐기물의 성상 및 특성에 따른 관리를 강화하고, 시·도지사로 하여금 관할 구역안에 일반폐기물처리사업에 대한 조정, 산업폐기물의 상황파악, 매립지의 확보 등 산업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의무를 부과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며,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로 하여금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한편, 산업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경영하는 자는 산업폐기물 배출업자 등록을 하도록 하여 산업폐기물 규제대상을 명확히 하고, 국가와 시·도지사가 산업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자가 생산공정의 개선, 재생이용 기술의 개발 등으로 폐기물의 발생량을 감소했을 경우 조세를 감면하는 등 기타 시행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법률의 현실적응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 2. 주요골자

가. 폐기물을 일반폐기물과 산업폐기물로 구분하여 산업폐기물 이외의 것은 일반폐기물로 분류함. (안 제 2조)

나. 시장, 군수는 일반폐기물처리사업을 수행하고,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안의 일반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 산업폐기물의 상황파악, 매립지의 확보 등 산업폐기물의 적정처리를 하며, 국가는 폐기물처리에 대한 기술의 연구, 개

발, 지원,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에 대하여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 및 시·도간 폐기물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도록 함. (안 제 4조)

다. 시장, 군수는 일반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며, 시·도지사는 산업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함. (안 제 6조)

라. 일반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 (안 제 9조)

마. 분뇨 또는 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안 제 12조)

바. 산업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경영하는 자는 시·도에 등록하여야 함. (안 제 20조)

사. 국가 또는 시·도지사는 산업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음. (안 제 24조)

아. 산업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환경청장은 산업폐기물처리업자의 영업구역을 정할 수 있으며, 산업폐기물의 발생량과 처리업자의 지역적 분포를 고려하여 산업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제한할 수 있음. (안 제 26조, 제 27조)

자.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가 폐기물 매립시설을 설치하고자 환경청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공유수면매립법, 산림법,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천법, 수산업법에 의한 협의, 승인,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안 제 33조)

차. 사업자가 생산공정의 개선, 재생이용 기술의 개발 등으로 산업폐기물의 발생량을 크게 감소시킨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 함. (안 제 41 조)  
카. 과태료 부과를 행정기관 부과제도로 전환  
함. (안 제 51 조)

## 법률 제 호

# 폐기물관리법개정(안)

폐기물 관리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 제 1 장 총 칙

**제 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라함은 쓰레기, 재, 오니, 분뇨, 폐유, 폐산, 폐알칼리, 동물의 사체,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로 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서 고체, 반고체 또는 액체상태의 것을 말한다.
2. “일반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 분뇨 등으로서 산업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산업폐기물”이라함은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 잔재물, 폐유, 폐산,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 폐기물로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폐기물처리”라함은 폐기물을 보관, 수집, 운반 또는 처분(매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것을 말한다.
5. “분뇨처리시설”이라함은 분뇨를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시설로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쓰레기처리시설”이라함은 매립, 소각, 재생분류, 퇴비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쓰레기를 안전하게 처분하는 시설로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오수정화시설”이라함은 분뇨와 생활수를 처분하는 정화시설로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8. “분뇨정화조”이라함은 분뇨를 안전하게

처분하는 정화시설로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9.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이라함은 매립, 소각, 분해, 중화, 시멘트 고형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산업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하는 시설로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0. “공공처리시설”이라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자가 설치하는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을 말한다.

11. “축산폐수 정화시설”이라함은 가축사육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로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 3조(적용배제)** 이 법은 원자력법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물질 및 이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시장(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을 제외한다), 군수, 구청장(서울특별시, 직할시에 한한다) (이하 “시장, 군수”라 한다)은 주민의 청소 의식을 함양함과 동시에 일반폐기물처리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폐기물처리 담당요원의 자질 향상, 폐기물처리시설의 정비 및 작업방법의 개선 등 사업의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및 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시장, 군수에 대하여 제 1 항의 책무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함과 동시에 관할 구역 안의 일반폐기물처리 사업에 대한 조명을 하며, 산업폐기물의 상황을 파악하고, 매립지의 확보 등 산업폐기물의 적정한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폐기물처리에 대한 기술을 연구, 개발, 지원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에 대하여 제 1 항 및 제 2 항의 책무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기술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하며, 서울특별시, 직할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간의 폐기물처리 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제 5조(청결의 유지)** ①모든 국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따로 있을 때는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이와 같다)는 소유하고 있는 토지 또는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의하여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시장,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공중변소, 공중용 쓰레기용기 및 쓰레기 적환장을 설치하여 이를 위생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④변소가 설치되어 있는 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행하는 자는 당해 변소에서 배출되는 분뇨를 생활환경의 보전에 지장이 없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제 6 조 (폐기물처리 기본 계획의 수립)** ①시장, 군수는 관할 구역안의 일반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②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안의 산업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③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 기본 계획의 내용, 수립시기, 승인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 제 2 장 일 반 폐 기 물

### 제 1 절 일반폐기물의 처리

**제 7 조 (특별청소지역)** ①시(서울특별시, 직할시를 포함한다) 또는 읍의 구역을 특별청소지역으로 한다. 다만,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정하는 구역은 제외한다.

②도지사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별청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 8 조 (일반폐기물처리)** ①시장, 군수는 특별청소지역안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에 의하여 집적된 일반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활환경의 보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①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기준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③특별청소지역 안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변소 및 쓰레기 용기를 설치하여 이를 위생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2. 쓰레기를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나누어 보관하여야 한다.

3. 기타 시장, 군수가 행하는 일반폐기물의 처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특별청소지역 안에서 사업활동에 따라 다량의 쓰레기를 배출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쓰레기를 처리하여야 한다.

⑤시장, 군수는 제 4 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⑥시장, 군수는 일반폐기물의 처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 9 조 (일반폐기물처리법)** ①일반폐기물의 처리를 업으로 하는 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려하지 아니하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가 배출하는 일반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2. 재생이용을 목적으로 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3. 연구의 목적이 되는 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4. 기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업의 종류, 허가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③시장, 군수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때에는 허가기간과 수집구역을 정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일반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는 제 8조 제 2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반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 10조(결격사유)**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과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 등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그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 11조(허가의 취소 등)** ①시장·군수는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 10조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
2.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3. 제 9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을 유지하지 못한 때
4. 제 9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구역의 제한 기타 조건에 위반한 때
5. 제 9조 제 4항 또는 제 5항에 위반한 때
6. 제 29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7.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행하는 허가취소와 영업정지의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 2절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제 12조(분뇨 또는 쓰레기처리시설)** ①분뇨 또는 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자는 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환경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허가 또는 승인받는 사항 중 보

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 또는 쓰레기처리시설의 설치는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 기본 계획에 따라야 한다.

③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 또는 쓰레기처리시설의 설치기준,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④분뇨 또는 쓰레기처리시설의 관리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당해 처리시설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⑤환경청장은 분뇨 또는 쓰레기처리시설의 구조 또는 유지, 관리가 제 3항 및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시설의 설치자에 대하여 필요한 개선을 명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 13조(오수정화시설 또는 분뇨정화조의 설치 등)** ①공동 주택단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서 일정한 규모 이상의 건물, 기타 시설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건축물의 건축공사를 도급계약에 의하는 경우에는 도급인, 도급계약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를 스스로 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에 의한 대수선 및 용도변경의 경우의 오수정화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건물, 기타 시설을 건축할 때에는 그 건축주는 분뇨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에 의한 대수선 및 용도변경의 경우의 분뇨정화조 설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정화시설 또는 분뇨정화조를 설치하고자 하는자는 미리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건축주는 오수정화시설 또는 분뇨정화조의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

시설 또는 분뇨정화조의 설치기준,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⑥오수정화시설 또는 분뇨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오수정화시설 또는 분뇨정화조의 내부청소를 실시하는 등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⑦시장·군수는 오수정화시설 또는 분뇨정화조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당해 시설의 개수, 사용제한, 사용금지 또는 유지, 관리를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⑧시장, 군수는 오수정화시설 또는 분뇨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및 분뇨정화조의 내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후에도 오수정화시설 및 분뇨정화조의 내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⑨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여 가동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수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한다.

#### 제 14 조 (오수정화시설 및 분뇨정화조 청소업)

①오수정화시설 및 청소를 업으로 하려고 하는 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③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때에는 허가기간과 청소구역을 정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정화시설 및 분뇨정화조의 청소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정화조청소업자"라 한다)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오수정화시설 및 분뇨정화조의 청소를 하여야 한다.

⑤제9조 제6항의 규정은 정화조 청소업자의 장부기록에 관하여, 제10조의 규정은 정화조 청소업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 제1조의 규

정은 오수정화시설 및 분뇨정화조 청소업 허가의 취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 3절 일반폐기물처리시설업

##### 제 15 조 (일반폐기물처리 설계, 시공업의 등록등)

①분뇨 또는 쓰레기처리시설이나, 오수정화시설의 설계, 시공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자기의 사업장에 분뇨 또는 쓰레기 처리시설을 스스로 설계, 시공하는 경우와 건축주가 자기의 건물, 기타시설의 오수정화시설을 설계, 시공하는 경우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청장의 승인을 얻어 직접 이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청장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자격 있는 자를 시공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분뇨정화조의 설계, 시공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제10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 또는 쓰레기처리시설, '오수정화시설이나 분뇨정화조(이하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이라 한다) 설계, 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설계, 시공업자"라 한다)의 결격사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 16 조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설계, 시공업자의 계속 공사)

①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도급계약에 한하여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의 설계, 시공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청장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시공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를 감리, 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의 설계, 시공을 계속하는 자는 당해시설의 설계, 시공을 완료할 때까지 이 법에 의한 설계, 시공업자로 본다.

##### 제 17 조 (분뇨정화조 제조업의 등록등)

①분뇨정화조의 제조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

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②제 10조의 규정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정화조 제조업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 18조** (분뇨정화조의 규격등) 제 17조의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정화조 제조업 등록을 한 자가 제조하는 분뇨정화조의 구조, 규격 및 성능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 19조** (등록의 취소등) 환경청장은 설계, 시공업자 또는 분뇨정화조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 10조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
2.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한 때
3. 부정한 수단으로 등록을 한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의 설계, 시공을 부실하게 한 때 또는 분뇨정화조의 제조를 부실하게 한 때
5. 타인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때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계약체결에 관한 자격이 정지된 때
7. 도급받은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때
8.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제 3 장 산업폐기물

#### 제 1 절 산업폐기물의 처리

**제 20조** (산업폐기물 배출업자 등록) ①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산업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경영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에 산업폐기물 배출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 21조** (사업자의 의무) ①제 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폐기물을 배출업자 등록을 한 자 (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업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산업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생산공정에 관한 기술 개발로 산업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3. 재생이용 기술개발 기타 방법에 의하여 산업폐기물의 감량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②사업자는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폐기물의 발생량, 재생이용 및 처리실적 등을 기록하고, 그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 22조** (산업폐기물의 회수조치) ①사업자는 물건의 제조, 가공, 판매 등에 있어서 그 제조, 가공, 판매 등에 관계되는 제품, 용기 등이 폐기물로 되었을 경우에 그의 회수 및 처리가 용이하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환경청장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 용기 등이 환경보전법 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거나, 다량으로 제조, 가공 판매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제품, 용기 등이 폐기물로 되는 경우의 그 회수 및 적정한 처리방법 등을 고시하고, 그 제품, 용기 등의 제조, 가공, 판매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 23조** (사업자의 처리) ①사업자가 그의 산업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산업폐기물의 처리방법과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그의 산업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 2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폐기물 공공처리시설에 그의 산업폐기물을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③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그의 산업폐기물을 산업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내에 있는 산업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한

다.

**제 24 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리)** ① 시장, 군수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산업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

② 국가, 시·도지사 또는 보건사회부령이 광역처리를 위하여 산업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이외의 자가 설치하는 때에는 환경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 산업폐기물의 처리기준은 제 23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산업폐기물의 처리를 공공처리 시설에 위탁하여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폐기물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징수, 제 2 항 및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운영, 위탁처리의 절차, 수수료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 25 조 (산업폐기물 처리신고)** 사업자가 그의 산업폐기물을 영업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 처분하고자 할 때 또는 산업폐기물 처리업자가 위탁받은 산업폐기물을 운반 또는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폐기물의 발생지와 처분장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다를 경우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생지 및 처분장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제 26 조 (산업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① 산업폐기물 처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자가 그의 산업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2. 사업자가 재생이용을 목적으로 타인의 산

#### 업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3. 기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폐기물 처리업의 종류, 허가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는 영업구역 기타 생활환경의 보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산업폐기물 처리업자”라 한다)는 산업폐기물의 수집처, 양 및 그 처리설비 등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⑤ 제 10 조 및 제 19 조의 규정은 산업폐기물을 처리업자의 결격사유 및 그 허가의 취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 27 조 (산업폐기물 처리업 허가의 제한)** 환경청장은 제 26 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함에 있어서 산업폐기물의 발생량과 산업폐기물 처리업자의 지역적 분포 등을 고려하여 그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제 2 절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제 28 조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①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는 제 6 조의 규정에 의해 산업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에 따라야 한다.

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④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의 관리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관리기준에 의하여 당해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⑤ 환경청장은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의 구조 또는 유지, 관리가 제 3 항 및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당해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개선을 명

하거나 기간을 정해서 당해 산업폐기물을 처리 시설의 사용금지를 명할 수 있다.

#### 제 4 장 보 칙

**제 29 조 (투기금지)** ① 누구든지 제 23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방법과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산업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지역에서 일반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된다.

1. 특별청소지역 안 또는 그 연안해역
2. 공원, 광장, 도로, 항만, 하수도, 하천, 운하, 호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제 30 조 (산업폐기물 수입제한 요청)** 환경청장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업폐기물의 수입제한을 상공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 31 조 (가축사육의 제한등)** ① 시장, 군수는 생활환경의 보전 및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장, 군수는 가축사육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의 보전에 현저한 위해가 있거나 또는 그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축사육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사의 이전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6월 이상의 이전 기간을 주어야 한다.

③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축산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설치, 관리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⑤ 시장, 군수는 축산폐수 정화시설이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시설의 개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를 명할 수 있다.

**제 32 조 (분뇨사용의 제한)** ① 특별청소지역 안에서는 분뇨를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비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시장, 군수는 특별청소지역 안에서 영농자로 하여금 분뇨를 비료로 사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뇨를 제 1 항의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33 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제 12조 제 1 항 및 제 24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매립시설을 설치하고자 환경청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협의, 승인,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국토이용관리법 제 8 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의 변경 결정, 동 법 제 15 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 지역 안의 행위제한의 배제 및 동법 제 20 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2. 도시계획법 제 4 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 허가 또는 동법 제 19 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 및 지구안의 행위제한 배제

3. 공유수면매립법 제 4 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 매립면허

4. 산림법 제 90 조의 규정에 의한 임목벌채 등의 허가

5.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 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 허가

6. 하천법 제 25 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등 허가

7. 수산업법 제 6 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수면 수역 안에서의 매립 협의

② 환경청장은 제 1 항 각호의 해당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가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보전법 제 1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환경보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결정한다.

**제 34 조 (사업의 휴업, 폐업신고)**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등록을 한 자가 그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허가 또는

등록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35 조 (청문의 실시)** 환경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는 제 11조 또는 제 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6 조 (보고의 정수)** 환경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는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업자, 일반폐기물 또는 산업폐기물 처리업자, 설계·시공업자, 분뇨정화조제조업자, 제 9조 제 1항 및 제 26조 제 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재생,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재생 이용 실태,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의 구조 및 유지, 관리,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설계·시공 및 분뇨정화조의 제조설적에 관하여, 정화조 청소업자에 대하여는 오수정화시설 및 분뇨정화조의 청소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 37 조 (업무의 위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설치한 공공처리시설, 분뇨 또는 쓰레기 처리시설, 공중변소, 공중용 쓰레기용기, 쓰레기 적환장, 기타 공중 위생시설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유지, 관리에 관한 업무를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을 받은 자는 당해 시설을 설치한 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유지, 관리에 관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 38 조 (검사)** ①환경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는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소속직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 하여금 사업자, 일반폐기물 또는 산업폐기물 처리업자, 설계·시공업자 및 분뇨정화조 제조업자, 정화조 청소업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이 있는 토지 또는 건물에 출입하여 폐기물의 처

리,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의 구조 및 유지, 관리, 설계·시공업 및 분뇨정화조제조업 또는 오수정화시설 및 분뇨정화조의 청소에 관한 장비,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자는 그 신분을 표시하거나 위임을 받았다는 증명서를 휴대하여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 39 조 (조치명령)** 환경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는 일반폐기물 또는 산업폐기물의 처리가 제 8조 제 2항 또는 제 23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방법 또는 기준에 위반하여 생활환경의 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리를 한자에 대하여 그 위해의 제거 또는 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 40 조 (기술관리자)**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당해 시설의 유지, 관리에 관한 기술 업무를 담당시키기 위하여 기술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스스로 기술관리를 하는 경우와 관리대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관리자의 자격, 관리대행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41 조 (조세감면)** 사업자가 생산공정의 개선, 재생 이용 기술의 개발 등으로 산업폐기물의 발생량을 크게 감소시킨 경우에는 조세감면 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세 또는 면세할 수 있다.

**제 42 조 (국비보조)** 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분뇨 또는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2. 산업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제 43 조 (허가수수료등)**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44 조 (권한의 위임)** 환경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45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 5 장 벌 칙

**제 4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 12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분뇨 또는 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2. 제 13 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3. 제 15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분뇨 또는 쓰레기 시설이나 오수정화시설의 설계, 시공을 업으로 한 자.
4. 제 17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분뇨정화조의 제조를 업으로 한 자.
5. 제 20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폐기물 배출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6. 제 26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업폐기물을 처리를 업으로 한 자.
7. 제 28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제 4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 8조 제 4 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 9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폐기물 처리를 업으로 한 자.
3. 제 14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오수정화시설 또는 분뇨정화조의 청소를 업으로 한 자.
4. 제 15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분뇨정화조 설계, 시공을 업으로 한 자.

5.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 1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받은 자.

6. 제 29조 제 1 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7. 제 3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8. 제 31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9. 제 39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제 48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는 6월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 12조 제 5 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2. 오수정화시설에 관한 제 13조 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3. 제 22조 제 2 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 24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5. 제 28조 제 5 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6. 제 31조 제 2 항 및 제 5 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7. 제 40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관리자를 두지 아니한 자.

**제 4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 9조 제 6 항(제 14조 제 5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 21조 제 2 항 및 제 26조 제 5 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 13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3. 분뇨정화조에 관한 제 13조 제 7 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 17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자가 제조한 분뇨정화조를 판매한 자.
5. 제 2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제 29조 제 2 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7. 제 3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 3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 50조(양벌규정)** 범인의 대표자 또는 범인이

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 내지 제4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도 각 본 조의 벌금형에 처한다.

**제51조(과태료)** ①제 13조 제 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처리용량 100인 미만의 오수정화조의 내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 8조, 제 3항, 제 13조 제 3항, 제 4항 또는 제 32조 제 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적용을 받는 자 이외에 제 13조 제 6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③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가 부과, 징수한다.

④제 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30일 이내에 시장,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 군수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⑥제 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처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법의 폐지 등)** ①이 법 시행과 동시에 오물청소법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환경보전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조 제 15호, 제 49조의 3 내지 제 52조의 3, 제 67조 제 4호를 삭제하고, 제 67조 제 5호 중 “제 52조의 3 또는 제 58조 제 2항의 규정”을 “제 58조 제 2항의 규정”으로, 제 68조 제 1호 중 “제 37조 제 1항, 제 50조 제 3항, 제 51조 제 1항, 제 52조 제 1항, 제 52조의 2의 제 1항 또는 제 60조의 3 제 1항”을 “제 37조 제 1항 또는 제 60조의 3 제 1항”으로, 제 68조 제 2호 중 “제 42조 제 1항, 제 49조의 3 제 3항, 제 49조의 4 제 2항 또는 제 52조의 2 제 3항”을 또는 “제 42조 제 1항”으로, 제 69조 제 1호 중 “제 35조 제 1항 또는 제 51조 제 2항”을 “또는 제 35조 제 1항”으로 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건축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53조의 4를 삭제하고, 제 5조 제 6항 제 4호 “오물청소법 제 15조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및 동법 제 16조에 의한 분뇨정화조의 설치신고”를 “폐기물관리법 제 13조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분뇨정화조의 설치신고”로, 제 7조 제 6항 제 1호 “오물청소법 제 18조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분뇨정화조의 준공검사”를 “폐기물관리법 제 13조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분뇨정화조의 준공검사”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오물청소법 제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및 환경보전법 제 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 오수정화시설 및 분뇨정화조 청소업 허가 또는 산업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오물청소법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 또는 쓰레기 종말처리시설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 제 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정화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 제 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정화조의 설치 신고를 한 자 및 환경보전법 제 5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폐기물 종말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허가, 승인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오물청소법 제 19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또는 쓰레기종말 처리시설, 오수정화시설 및 분뇨정화조, 설계, 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제 20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정화조 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④제 2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폐기물 배출 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에 등록하여야 한다. \*

# 독자의 글

“

## 인구·성감별·환경

”

조경수／(주)영풍자재파

작가 이호철씨의 「서울은 만원이다」라는 책명을 굳이 인용치 않더라도 「서울」이란 거대 도시는 정말이지 과포화상태다. 서울의 중심가가 아닐지라도 그 많은 사람들로 인해 숨이 막힐 지경이다. 그렇다고 사람이 서울에만 몰려있고 지방에: 나가면 한적한 것만은 아니다. 세계에서 인구밀도 높기로 메달권 안에 드는 우리는 확실히 좁은 땅덩어리에 비해 인구가 많다. 그 많은 인구도 묘하게 서울에만 집중적으로 몰려있으니 애를 낳으면 이제 「무조건 서울로」라는 슬로건이 생기지 않을까 두렵다. 다행히 인구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일찍 파악한 우리나라라는 가족계획을 세워 인구증가율을 많이 낮추었다.

「서기 2000년의 지구문제」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오늘날

증가하는 인구와 함께 고도산업화만 추구하고 환경보전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서기 2000년에 가서 지구상의 생물종 약 50만~100만종이 사라져 없어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각 나라의 인구문제는 곧 우리의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의 인구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세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관건이 될 수 있다. 결국 인구문제=환경문제라는 이야기다. 따라서 서울의 인구문제는 우리나라의 환경문제다. 즉, 인구증가율을 낮추는 것은 「환경보전」으로 귀착된다는 사실이다.

한데 근자에 와서 재미있는 사실이 나타났다. 세계적인 추세가 「유니섹스」 시대로 남녀를 분간할 수 없는 모드가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아

시아나 아프리카에선 그렇지 못하다. 인도 빈곤층의 경우는 딸을 낳으면 80% 이상이 독이 들어있는 딸기를 먹여 죽이고, 「하나 낳기」를 강행하고 있는 중공의 경우도 아들이 아닌 이상 죽여 없애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규제안이 마련되어 있지만 소위 초음파 촬영 등의 성감별을 해서 벳속에서 죽여버리는게 다를 뿐이다. 그래서 남녀의 균형이 깨지고 있다는 것은 경제기획원의 통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미국의 로스엔젤스·타임스가 지난 11월에 보도했었다고 한다. 창피한 일이며 이런 식의 인구감소는 「환경보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인간존엄」의 문제이다. \*